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기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정애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에게 더욱 상세한 예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기예보의 예보대상 기간을 늘리는 한편, 국민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협의 전

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분하여 발표한다”를 “구분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초단기예보: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
2. 단기예보: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
3. 중기예보: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
4. 장기예보: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

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

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 보)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· 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 시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예보로 <u>구분하여 발표한다.</u>	제8조(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 보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분한다.</u>
1. <u>초단기예보 : 예보대상기간 6</u> <u>시간 이내</u>	1. <u>초단기예보: 예보대상기간 6</u> <u>시간 이내</u>
2. <u>단기예보 : 예보대상기간 3일</u> <u>이내</u>	2. <u>단기예보: 예보대상기간 5일</u> <u>이내</u>
3. <u>중기예보 : 예보대상기간 10</u> <u>일 이내</u>	3. <u>중기예보: 예보대상기간 10일</u> <u>이내</u>
4. <u>장기예보 : 예보대상기간 11</u> <u>일 이상</u>	4. <u>장기예보: 예보대상기간 11일</u> <u>이상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	
연 락 처	(042) 481 - 7299